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 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유럽연합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 항):
2.	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유럽집행위원회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 유럽집행위원회 EU-TBT 질의처 팩스: +(32) 2 299 80 43 이메일: grow-eu-tbt@ec.europa.eu 웹사이트: http://ec.europa.eu/growth/tools-databases/tbt/en/
3.	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등에 근거해 통보:
4.	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번호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울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화장품
5.	제목 (페이지수, 언어): 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및이사회의 규정(EC) No 1223/2009 의 부록 V 를 개정하는 집행위원회규정안(부록 포함 5 페이지, 영어)
6.	내용: 본 집행위원회규정안은, 최대 0.7% 농도까지 세정, 구강보호, 그리고 잔존형(leave-on) 화장품에 사용하는 새로운 방부제 성분, 하이드록시에톡실페닐 부탄(HEPB)의 승인을 제안한다.
7.	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: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

8. 관련 문서:

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9 년 11 월 30 일 규정(EC) No 1223/2009(*OJ L 342, 22.12.2009, p. 59-209*)

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415977955828&uri=CELEX:32009R1223>

9. 채택 예정일: 2019 년 4 분기

시행 예정일: EU 관보에 공포 후 20 일

10. 의견 마감일: 고지 후 60 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유럽집행위원회

EU-TBT 질의처

팩스: + (32) 2 299 80 43

이메일: grow-eu-tbt@ec.europa.eu

문안은 EU-TBT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:

<http://ec.europa.eu/growth/tools-databases/tbt/en/>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19/TBT/EEC/19_1780_00_e.pdf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19/TBT/EEC/19_1780_01_e.pdf